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총계	양성	남	여	
			111	2	101	8	
공개경쟁 채용 이하 <b>'공채'</b>	소방	소방사	61		58	3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경력경쟁 채용 이하 <b>'경채'</b>	법무	소방경	1	1			-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신체+면접)
	항공조종	소방위	2		2		<b>별도 공고에 의함</b>
	운항관리	소방교	1	1			
	구급	소방사	24		19	5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영어(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구조	소방사	6		6		
	화학	소방사	2		2		
	건축	소방사	2		2		
	운전	소방사	7		7		
정보통신	소방사	2		2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3		3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 시험 일정

구분	장소 공고일	시험 예정일	합격 발표일
원서접수	'20. 2. 10.(월) ~ 2. 14.(금) → 취소기간 : '20. 2. 10.(월) ~ 2. 17.(월)		
필기시험	3. 09.(월)	3. 28.(토)	4. 13.(월)
체력시험	4. 13.(월)	4. 21.(화) ~ 4. 23.(목)	5. 08.(금)
신체검사/서류전형 (인적성검사)	5. 08.(금)	5. 18.(월) ~ 5. 19.(화)	5. 27.(수)
면접시험	5. 27.(수)	6. 01.(월) ~ 6. 03.(수)	6. 23.(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u.go.kr](http://www.jeu.go.kr)) 『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3 응시 자격

#### □ 응시자격 등 기준일

채용구분	종류	기준일(보유 등)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일
	거주지 제한	최종시험일
	운전면허	최초시험일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등	최초시험일 전일
경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결정을 취소함

#### □ 응시 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경력경력채용 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 응시연령

채용구분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채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2002.12.31.
경채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2000.12.31.
경채(법무)	지방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1.1. ~ 1997.12.31.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도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2-2】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분야	거주지 요건
공채	소방	※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경채	구급	1.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구조	
	운전	2.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사람
	소방 관련학과	
	법무, 화학 건축, 정보 통신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가. 공·경채 공통

- 운전면허

채용구분	응시자격 등
공채	도로교통법 제80조 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채	

나. 경채분야

- 공통사항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다만, 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가능

○ 자격 및 경력

분야	자격(경력) 제한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재(사법연수원 수료)</li> <li>▶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li> </ul>						
경력 경쟁 채용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자격증 취득일 기준)</li> <li>① <b>응급의료업무 경력</b>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② <b>간호업무 경력</b>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li> <li>※ <b>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b>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li> <li>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li> <li>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li> <li>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li> <li>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 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li> <li>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li> <li>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li> </ul> </div>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b>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b>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 </tr> <tr> <td>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td> <td>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td> </tr> <tr> <td>③ 기 타</td> <td>특수전부대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	③ 기 타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						
③ 기 타	특수전부대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분 야	자격(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b>화 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화학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li> <li>※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li> <li>※ 화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li>▶ 화학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화학 관련 자격증 : 기술사(화공), 기능장(위험물),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산업기사(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li> </ul>
	<b>건 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lt;동일계통학과 증명서&gt;로 인정</li> <li>※ 건축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li> <li>▶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건축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li> <li>※ 건축 관련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li> </ul>
	<b>무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Ⅱ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4대 포함적용이 있는 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li> <li>※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li> <li>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li> <li>③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li> <li>④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li> <li>⑤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외하되 소방기관 및 공학·항만소방대, 자체소방대*에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배연차, 구조공작차를 운전한 경력은 포함)</li> </ul> </li> <li>* 지역소방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한 소방대 포함</li> </ul>
	<b>정보통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li> </ul>
	<b>소방 관련학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li> <li>▶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li> <li>* 유사 학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붙임13】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유사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li> </ul>

## 4 원 서 접 수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0.(월) 09:00 ~ 2. 14.(금) 18:00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 2020. 2. 10.(월) 09:00 ~ 2. 17.(월) 18:00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사진등록 (3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반명함(3cm×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응시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일반 스냅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출력기간 : 2020. 3. 9.(월) 이후
  - ※ 매 시험응시 시 반드시 지참하도록 할 것

###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소방장 이상 7천원, 소방교 이하 5천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별도의 추가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미결제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 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됩니다.
- 해당시도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산특전

#### ○ 가점입력

- 시 기 : 원서접수 시
- 방 법 : 가점관련 등록번호 입력
  -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에 유의
-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대상자 【XI. 유의사항/ 2. 원서접수】 참조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산 대상자 및 비율표 【붙임 3, 3-2】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b>1개만 적용</b>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필기시험 적용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b>공채시험에 한함</b>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b>최대 5%까지만 적용</b>
	사무관리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가점은 **각각 적용**

## 5 필 기 시 험

###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채)10:00~11:40 / (경채)10:00~11:00
  -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시험과목

구 분	과목	
공채	필수(3) : 국어, 한국어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sup>1)</sup> , 사회, 과학, 수학	
경채	법무	필기시험 면제
	구급, 구조, 화학, 건축, 운전, 정보통신	국어, 영어(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sup>2)</sup>

####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수학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됩니다.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붙임 4】
- 소방관계법규
  - <sup>1)</sup> 공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sup>2)</sup> 경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약칭)(법, 시행령)

### □ 문제 이의제기 신청

- 가(정)답안 공개 : 3. 28.(토) 16:00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신청기간 : 3. 28.(토) 16:00 ~ 3. 29.(일) 24:00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절 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붙임 5】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 용 :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결정

- 조정점수 : 공채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붙임 6】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 **2배수**의 범위(단, 3명 이하 선발분야는 **3배수** 범위)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6** 체력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6종목 【붙임 7】
    -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 : 【붙임 7-2】
  - 이의제기 운영 : 시험관리위원회(관정관 전원참여) 개최 후 결과 통보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퍼센트(3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붙임 7-3 ~ 7-5】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 도핑테스트 안내문 : 【붙임 7-3】 참고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7-4】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7** 서류전형

□ 서류제출

- 제출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 심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분야	제출서류
공 통	① 기본증명서 1부(상세) ⇨ <b>응시자 본인 기준 발급</b>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 <b>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b>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b>주소변동이력, 및 병적사항 포함</b> ④ 운전경력증명서 1부 ⇨ <b>전체경력으로 발급</b> ⑤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1부 ⇨ <b>원본 지참</b> ⑥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⑦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 2부 ⇨ <b>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재</b> ⑧ 신원진술서 3부(단면인쇄) ⇨ <b>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포함</b> ⑨ 자기소개서 3부(면접시험용)(※ <b>법무분야 제외</b> )  <b>[기타] 해당자만 제출</b> ○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 1부(전역예정일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개경쟁	①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b>해당자에 한함</b>
경력 경쟁	<b>법무</b> ①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및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b>붙임 8-3</b>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 <b>해당자에 한함</b> ⑤ 직무역량기술서 3부
	<b>구급</b> ①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군복무확인서 1부 ⇨ <b>해당자에 한함(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으로 응시한 자)</b> ③ 경력증명서【 <b>붙임 8-3</b>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b>구조</b> ①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1부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고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1부 ⇨ <b>해당자에 한함</b>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b>화학, 건축</b> ① 졸업증명서 1부 ⇨ <b>학위 소지자에 한함</b> ②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b>붙임 8-4</b> 】 1부 ⇨ <b>학위 소지자 중 유사학과 졸업자에 한함</b> ③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b>자격증 소지자에 한함</b> ④ 경력증명서【 <b>붙임 8-3</b>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b>운전, 정보 통신</b> ①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② 경력증명서【 <b>붙임 8-3</b>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각 1부
	<b>관련 학과</b> ① 졸업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 성적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급여내역 확인자료(통장사본 등) 제출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붙임 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서류제출일 기준)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 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 8-2】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제출서류는 추후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8

### 신체검사 / 인·적성검사

#### □ 신체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지정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서류전형 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2-3】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 신체검사 주의사항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쇄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고, **수기작성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 신체검사서만 유효
  -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 □ 인·적성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소집 후 질문지 작성(향후 별도 공고 안내)
- 검사결과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9 면접시험

### □ 면접시험

- 대상자 : 신체검사·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붙임 9】

구분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
총 5항목 60점	3항목 30점	2항목 30점

- 합격자 결정
  - 합격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sup>0</sup>, D)를 평정한 경우

## 10 최종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 기준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 법무분야는 면접시험 100%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1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 시험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 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내문 【붙임 10】

## 2. 원서접수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최종시험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1】**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 응시 결격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취소할 수 없습니다.
  - ※ 단, 가산특전과 관련한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가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하고**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각 호의 가점(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를 취득한 응시자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필기시험

-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수기 채점하지 않음)**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이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모자, 마스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시험 중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운영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4. 체력시험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 시행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손 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가능 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신체검사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 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소방행정팀)
- 연락처 : 064-710-3514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 우편번호: 63119

붙임

1. 응시결격 사유 등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2-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2-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2-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 3-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1부.
4.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5.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서 1부.
6.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7-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 7-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7-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7-5.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분야) 1부.
  -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 8-3.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1부.
  - 8-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9.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부.
10.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11.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3. 소방관련 과목 1부. 끝.